自殺 관련 표준약관 및 판례 검토

삼성생명보험(주) 법무팀

변호사/의사 박진석

Ⅰ. 관련 규정

-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상법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자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접수 : 2008년 8월 29일 / **게재승인** : 2008년 9월 11일
교신저자 : 박진석

Ⅱ. 고의 자살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 검토

1. 고의 자살 인정 여부에 관한 법원의 기준(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상 사고 전후의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성00이 자살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물증이나, 동인이 자살할 만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만 가지고서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입증되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성재민이 달리는 기차에 쉽게 치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그 결과를 스스로 용인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단정하여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의 하나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2. 명정상태에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사한 경우 자살 인정 여부

가.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7.7. 선고 2005가합90327)

- 망인이 추락한 베란다의 형태를 보면, 하단 창문에 설치된 보호난간의 높이가 110cm에 이르러, 키가 170cm 내지 175cm의 성인남자가 그 앞에 섰을 경우 가슴부분이 난간 상단에 걸리기 때문에 술에 취해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라도 위 난간을 넘어 아파트 바닥 쪽으로 추락할 수는 없는 점,

- 망인은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1.5m나 이동한 지점에 엎드린 자세로 추락한 점, 망인은 변사체로 발견되기 약 2시간 전 베란다에서 뛰어내린다고 하여 이ㅇㅇ와 사이에 실랑이를 벌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 망인은 실족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위 베란다의 하단 창문 보호난간 위에 올라간 다음 바닥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인된다. (중략)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사고와 관련하여 상속인들이 수령하게 될 거액의 보험금을 의식하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스스로 야기하였다고 추인된다.

- 따라서 ~ '재해' 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면책약관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7.9.21. 선고 2006나74497)

- 비록 망인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원고 박ㅇㅇ마저도 카드대금 등의 연체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경매절차로 넘어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 망인 부부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6,000만 원 미만으로 원고 박ㅇㅇ의 경제활동에 비추어 그리 많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박ㅇㅇ의 아파트가 경매로 처분될 경우 상당 부분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평소 등산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 왔던 점으로 보아 생에 대한 애착이 강하였다고 보이는 반면 뚜렷한 자살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통상 자살자에게서 발견되는 유서도 없는 점,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278%로 추정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던 점, (중략) 그 보험금 합계액이 9억 원 정도 되어 적지 아니한 액수이지만 목숨과 바꿀만한 금액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망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넋두리를 하고 베란다에서 뛰어 내린다는 등으로 객기를 부리다가 마침내 음주로 인한 병적인 명정으로 인하여 심신을 상실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후략)

Ⅲ. '精神疾患 등으로 자유로운 意思決定을 할 수 없는 상태' 에서의 자살에 관한 판례 검토

1. 판례 검토

가. 판례의 경향

- 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다70540, 70557 판결은 위 규정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을 의미하고, 이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 서울고등법원은 면책예외사유인 '정신질환상태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자살한) 경우' 란 자살자가 평소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살의 징후와 준비과정을 거쳐 자살하는 경우만으로 제한적으로 볼 것은 아니며, 위의 정신질환상태에는 외인성(외인성), 내인성(내인성) 외에도 심인성(심인성) 정신질환, 즉 명확한 신체요인 또는 뇌의 기질적인 변화 없이 강렬한 심리적 · 정신적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병적인 정신상태를 포함하고, 협의의 정신병, 신경병 외에 인격장애나 주취명정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상태, 고도의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 일시적 정신질환상태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규정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05.8.12. 선고 2004나72688 판결 참조).

나. 부부싸움 중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 부부싸움 중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 위 사고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망인이 추락함으로써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다. 정신질환(정신분열증, 우울증)으로 인한 복합적이고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한 경우(서울고등법원 2007.11.27. 선고 2007나14508)

- 망인은 2005. 5. 2. 인천 ○○구 ○○동 소재 △△△ 신경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정신과적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위 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는 망인에게 불안 및 불면, 식욕 및 의욕상실, 처에 대한 의심 및 피해망상, 판단력의 장애, 사고연상의 장애 및 병식결여 등의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정신분열증성 정신병 및 정신병적 우울증으로 진단하여 항불안제, 항우울제, 정신이완제 등의 투약치료를 처방한 사실, 망인은 위 약제들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다소 증세의 호전을 보이다가 이후 처에 대한 의심의 정도가 심해지고, 전혀 잠을 못자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2005. 5. 16. 다시 위 병원에 내원하여 위 약제들을 더 강하게 처방받은 사실, (중략)

- 망인의 위 병명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정확한 확진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망인이 보인 위와 같은 증상 및 그 발현 시기와 진행경과 등으로 보아 망인이 자살 당시 확실한 정신질환의 증세를 보이는 상태였고, 그 정도도 병원을 찾아간 처음부터 입원치료를 권유받을 정도로 심한 상태에서 점차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은 망인의 정신질환이 자살에 이른 주된 요인이 된 것은 분명해 보이고 망인의 가정문제 등 그 외의 특별한 자살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망인이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였고, 자살 장소인 방 안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넥타이를 그곳에 있는 장롱에 걸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하였으며, 유서 등 신병정리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망인이 자살을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위와 같이 죽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도 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자살 당일 망인의 이상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복합적이고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중략)

- 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라는 약관 규정은 너무나 추상적인 것이어서 {마치 정신질환 상태에 있기만 하면 그 정도나 상태가 어떠하든(심지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 정도이다.} 정신질환의 정도 등 좀 더 자세한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는 위 약관 규정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그 판단을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쟁송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불명확한 약관 규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약관작성자인 피고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점(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위 판단기준으로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의 의미는 이를 지나치게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망인이 위와 같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행위로 나아간 것은 망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우울증 의증, 조울증 의증으로 입원 치료한 적이 있는 피보험자가 심신허약 및 경제적인 곤란, 채권자들로부터의 독촉, 자녀들로부터의 소외감 등으로 인한 단순 우울상태에서 자살한 사안(서울고등법원 2007.8.14. 선고 2006나82894 판결)

- 피보험자가 2003.10.8. 우울증 의증으로 진단받은 사실, 2004.3.8. 조울증 의증으로 입원 치료한 사실, 2004.5.10.부터 1년간 우울증 등으로 입원 치료하고 2005.2.26. 자살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보험자가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보험자는 1997년부터 본태성 고혈압 등으로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한 사실, 채무 독촉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온 사실, 출가한 자녀와 거의 왕래가 없었던 사실, 사고 일주일 전 사찰 등지로 성지순례 다녀왔던 사실, 커튼줄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5.5.25.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기 보다는 심신허약 및 경제적인 곤란, 채권자들로부터의 독촉, 자녀들로부터의 소외감 등으로 인한 단순 우울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2. 검토

위 판결의 지적대로 위 표준약관의 규정은 정도를 불문하고 정신질환이 있기만 하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바, 위 표준약관규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예를 들면 '중증 정신분열증이나 중증 우울증, 중증 조울증 등 중대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라고 개정한다면 위 표준약관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Ⅳ. "정신질환 등으로 또는 2년 경과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석론 관련 판례 검토

1. ○○생명 무배당 □□□ 교통안전보험계약 관련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6.5.2. 선고 2005나 48507)

(1) 약관의 규정 및 기초사실

- 정00은 1999.1.19. 000신경정신과에서 기분부전 장애 의증, 반응성 우울증 장애 의증으로 진단받고 한 달 가량 통원 치료받았고, 사고 한 달 전에는 우울감, 불면증 등으로 내원하여 4일분의 약을 받아간 일이 있다.

- 정○○은 일요일인 2004.1.28. 지하철 전동차가 승강장 내로 진입하는 순간 철로에 뛰어들어 전동차와 충돌 후 장해제1급 장해상태가 된 후 2005.10.9. 사망하였다.

- 이 사건 주계약인 '무배당 □□□ 교통안전보험계약' 은 제14조 제1항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와 관련하여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다음 그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를 들면서 그 단서에서 다시 "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②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주계약에 부가된 재해보장특약 제11조는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재해보장특약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2) 재해보장특약상 재해 해당 여부

- 이 사건 사고는 고의적 자해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X60-X84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위 재해보장특약 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에는 위 고의적 자해가 위 32개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 재해분류표에 따른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보험자인 정00이 우울증 등으로 몇 차례 치료받은 사실만으로 정00이 사고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로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결국 이 사건 사고가 위 재해보장특약 약관이 정한 '재해' 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재해보장특약 제11조에 의하여 주계약 약관 제14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되는데, 위 규정 단서에 의하면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도 위 약관 단서에 따라 그것이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주계약 제1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피보험자가 2년 경과 후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목적으로 사고를 야기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될 수 있다는 고려에서 그 요

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험약관에서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것이지만, 위 주계약 약관에 따른 보험사고(주계약 제11조)와는 별도로 위 재해보장특약에 따른 보험사고인 '재해'는 위 특약 약관 별표2의 재해분류표에 의하여 그 재해의 종류 및 내용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중략) 재해보장특약이 정하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위 주계약 제14조가 특약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생명 □□□교통안전보험계약 관련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7.9.6 선고 2006다55005)

-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등 참조).

- 여기서 위 주계약 제14조 제1항 제1호 단서(2년 경과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주계약 제11조 또는 재해보장특약 제3조 소정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보험자의 면책사유만을 규정한 취지로 이해한다면,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보장특약 고유의 보험사고인 '재해'(재해보장특약 제1조 별표 2 참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하게 될 것이다.

- 오히려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 조항을 살펴보면,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주계약 또는 재해보장특약이 정한 보험사고(교통재해 등 또는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위 주계약 제1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치거나 계약의 책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 또는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이해할 여지도 충분하고, 여기에 원래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에 대하여는 위 제14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상법 조항(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제739조 참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게 되어 있어서 위 제14조 제1항 제1호 중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면책사유를 규정한 본문 부분이 아니라 부책사유를 정한 단서 부분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러한 해석론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또한 앞서 본 약관 해석에 있어서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검토

- "정신질환 등으로 또는 2년 경과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규정은 약관 전체의 규정 속에서 논리적 ·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원칙적으로 고의 자살인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질환 등으로' 또는 '2년 경과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일 뿐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까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1) 일반사망보험금을 규정하고 있는 주계약 약관에 있는 위 단서 규정은 (중대한) 정신질환 등으로 또는 2년 경과 후에는 고의 자살이라 하더라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 재해사망보험금을 규정하고 있는 재해보장특약 약관에 있는 위 단서 규정은 (중대한) 정신질환 등으로 또는 2년 경과 후에는 그 재해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그 재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보장특약상 주계약 준용 규정을 통해 주계약상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됨이 합리적으로 생각된다.

- 다만 위와 같은 해석론이 약관 규정상 명백하지는 아니하여 약관 해석의 대원칙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바, 위 해석론의 취지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